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2107호
2025년 6월 25일
수요일

훈 령

○ 훈 령 제 4 3 1 호 남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감 사 실 2
일부개정훈령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훈 령

남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

2025년 6월 25일

남동구 훈령 제431호

남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

남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경고 및 기관경고·훈계”를 “경고·기관경고, 훈계, 주의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처분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고·기관경고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, 경고는 기관장에게 적용하고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

2. 훈계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로,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

3. 주의 :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로,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

③ 제2항에서의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6호서식]

경 고 (훈 계) 장

제20 - 호

소 속

직 급

성 명

(처분 내용)

(관련 규정 및 위반 내용 기재)

□

○

○

년 월 일

남 동 구 청 장 인

제20 - 호

주 의 장

소속	
직급	
성명	

위반 및 처분내용

1. 사건요지
-
2. 처분사항
- 따라서 위 공무원에 대하여 ‘주의’ 처분하니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남 동 구 청 장 인

제(개)정 이유 및 주요내용

□ 제안이유

- 「남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에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종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“경고 등 처분”의 정의 기재사항 정정(안 제3조)
- 처분의 종류 구분 명확화(안 제14조)
 - 경고, 훈계, 주의 처분의 근거 및 기준 명확화
- [별지 제6호서식] 개정